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[별표 1의3] <개정 2016. 9. 29.>

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(제7조의3 관련)

-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
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.
 -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, 이자율, 수수료,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(이하 “신용카드등이용조건”이라 한다)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
 -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
 -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
 -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
 -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.
 -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
 - 신용카드회원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유통을 권유하는 행위
-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
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.
 -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.
 -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

-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(이하 “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”이라 한다)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
- 다.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
- 라.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
- 마.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
- 바. 신용카드등(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3자를 위해 발급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)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인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)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회원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, 총 수익,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후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1의3 2호 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